

의안번호	제 197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3년 3월 7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97
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3년 3월 7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계획 등의 수립 · 시행과 태양광산업육성 위원회의 설치 · 운영 및 각종 육성사업의 추진 또는 지원 근거 마련 등 태양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태양광산업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· 시행(안 제4조)
- 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· 구성 및 운영(안 제5조~제10조)
- 태양광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및 위탁 근거(안 제11조)
- 태양광산업 육성사업 수행기관 등에 대한 비용 지원(안 제12조)
- 육성사업의 수탁자 등에 대한 지도 · 점검(안 제13조)
- 국내외 태양광산업 관련 기업, 연구기관 등 유치 지원(안 제15조)
-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(안 제17조)

3. 의안전문 : 붙 임

4. 신 · 구조문 대비표 : 해당 없음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 임

6. 비용추계서 : 붙 임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태양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·지원과 태양광의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양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태양광산업”이란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만드는 태양광발전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태양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·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충청북도 내 시·군, 공공기관,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태양광의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을 장려하고 이를 보호·육성하여야 한다.

제4조(태양광산업 육성계획의 수립) ① 태양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·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계획(이하 “육성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
2. 기술개발 및 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
3.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
4.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
5.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
6. 설비 보급에 관한 사항
7. 홍보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④ 도지사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
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태양광산업육성
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태양광산업 관련 인력양성 시책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
3. 태양광산업 관련 시범사업 및 설비 보급 추진에 관한 사항
4. 태양광의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
5. 태양광산업 특구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도지사가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태양광산업 육성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

1. 태양광산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, 기업인,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기업지원기관의 임원

2. 그 밖에 도지사가 태양광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, 안건에 대한 심의 · 자문이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.

제7조(위원의 제척 · 기피 · 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(이 조에서 “해당 안건”이라 한다)의 심의 · 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·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(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(鑑定)을 한 경우

4.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

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(忌避)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회의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1조(태양광산업 육성사업의 추진) ①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
2. 태양광기술센터 및 모듈연구센터의 운영

3. 태양광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화
 4. 에너지산학융합지구의 조성
 5. 태양광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
 6. 태양광 관련 시범사업 및 설비 보급
 7. 태양광 관련 기업의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
 8. 국내외 산학연 교류·협력 및 공동 기술개발
 9. 그 밖에 도지사가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국공립연구기관
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기업지원기관
3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
4.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연 협력 관련 협의회 등
5. 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
6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
7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
8. 그 밖에 도지사가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·기업·법인 및 단체

제13조(지도·감독) ① 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(이하 “수탁자등”이라 한다)에게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다.

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, 사업보고서의 작성·제출 등 수탁자등에게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등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4조(투자권고) ① 도지사는 태양광 관련 사업자에게 태양광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

- ② 도지사는 태양광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태양광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·사업장 및 공동주택, 국민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15조(국내외 태양광 관련 기업 등 유치) ① 도지사는 태양광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, 연구기관 등을 충청북도 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「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」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제16조(수요조사)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17조(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) 도지사는 충청북도 내 공공기관, 기업, 단체,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태양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상호 연계·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8조(공무원의 파견) 도지사는 관련 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제19조(포상) 도지사는 태양광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, 단체 및 법인에게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재생에너지”란 햇빛·물·지열(地熱)·강수(降水)·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- 가. 태양에너지
 - 나. 풍력
 - 다. 수력
 - 라. 해양에너지
 - 마. 지열에너지
 - 바.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
 - 사. 폐기물에너지(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)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
 - 아. 그 밖에 석유·석탄·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
4. “신·재생에너지 발전”이란 신·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려하지 아니하다.

3. 농림·수산·상공업 등 산업 진흥
 - 차. 지역산업의 육성·지원
 - 타. 중소기업의 육성
 - 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·지원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별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산업별 육성지원 조례 표준안에 맞게 태양광 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, 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의 비상설 전환 등 탄력적 운영을 위한 항목을 신설 보완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
- 충청북도 태양광산업관련 협회·협의회 등 육성지원

3. 관련조문

- 안 제4조(태양광산업육성계획의 수립)
- 안 제12조(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)

4. 비용 추계결과

추계의 전제		추계 결과	재원조달방원	
사업명	① 태양광산업육성계획의 수립	100,000천원	- 도비	100,000천원
	② 태양광산업관련 협회·협의회 등 육성지원	200,000천원	- 도비	200,000천원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작성자 : 경제통상국 에너지과장 정경화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계
세 입						
세 출	140,000	40,000	40,000	40,000	40,000	300,000
태양광산업 육성계획 수립	100,000					100,000
태양광산업 관련 협회·협의회 육성 지원	40,000	40,000	40,000	40,000	40,000	200,000
재원 조달						
자체 수입	소 계	140,000	40,000	40,000	40,000	300,000
	세외수입	140,000	40,000	40,000	40,000	300,000